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적용 배제 신설〉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29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채현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5.
3. 회부연월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이 위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가 가능함.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현일위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① · ② (생략) <u><신설></u>	제8조(적용 배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은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로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인 경우에는 이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및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정당법」 제3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음.

한편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²⁾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 표지를 붙이도록 선거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³⁾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하 생략)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하 생략)

2)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 8. 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

개정안은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에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8)」의 의결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투표참여 권유) 및 제67조(선거운동)에 따른 현수막에 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여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상 적용배제 규정은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제4조에 대하여만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하여 이 법의 전면적인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수막의 허가·신고(제3조)나 금지·제한(제4조)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하여도 적용 배제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특히 현행법 제5조는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행산업, 일정한 내용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나 설치, 제작 등을 금지하고 있고,⁴⁾ 제10조는 위반시 조치명령,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 반하는 현수막 등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⁵⁾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의4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원활히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⁶⁾

제6조는 다른 법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⁷⁾

따라서 선거 관리 현수막을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제4조에 대하여만 적용배제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선거사무의 형평성·통일성을 위하여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관리 현수막은 정당현수막과 달리 현행법 제5조(금지광고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전제로 정당현수막과 유사하게 제3조 및 제4조에 대하여만 적용배제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투표참여권유 및 선거운동 관련 현수막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8조 제58)호의 답례 현수막 등에 대하여도 공직선거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대전광역시도 선거 업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0

8)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